용인 성복자이 1·2차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용인시는 2003년 6월 7일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전매 제한(계약체결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전매 금지)이 적용되며, 1순위자중 과거 5년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 또는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세대에 속한 분과, 1주택을 소유하신[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세대에 속한 분, 그리고, 2002.9.5 이후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9.5 포함)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 가능) 됩니다.
■ 당 아파트는 2007.09.0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2002.9.3)에 따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자이 1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시 주택과 - 7017호(2008.04.2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58번지 외 99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4층, 지상14~20층 아파트 12개동 총 719세대 및 부대시설(특별공급 포함)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3자녀 특별공급 114.409㎡ - 2세대, 130.558㎡ - 4세대, 156.148㎡ - 3세대, 169.980㎡ - 11세대, 186.843㎡ - 2세대: 총 22세대, 기타특별공급 114.409㎡ - 7세대)

(단위 :㎡)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층수 (최고층)
				세대별 공급면적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			
				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21941-01	2008000514(01)	114.409	84.196	30.213	114.409	5.378(28.399)	148.186	52.627	74	19
	21941-02	2008000514(02)	130.558	101.954	28.604	130.558	6.512(34.389)	171.459	63.727	134	20
	21941-03	2008000514(03)	156.148	124.858	31.290	156.148	7.974(42.113)	206.235	78.043	78	20
	21941-04	2008000514(04)	169.980	134.859	35.121	169.980	8.611(45.487)	224.078	84.294	357	20
	21941-05	2008000514(05)	186.843	157.115	29.728	186.843	10.034(52.994)	249.871	98.205	76	19

(단위 : 천원,VAT포함)

구분	주택형 (㎡)	층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입주시
								08.08.11	08.11.10	09.02.10	09.05.10	09.08.10	09.11.10	
성복자이 1차	114.409	1층	2	288,395	210,695	499,090	49,900	49,900	49,900	49,900	49,900	49,900	49,900	149,790
		2층	4		221,095	509,490	50,940	50,940	50,940	50,940	50,940	50,940	50,940	152,910
		기준층	68		231,485	519,880	51,980	51,980	51,980	51,980	51,980	51,980	51,980	156,020
	130.558	1층	4	349,223	220,817	570,040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171,040
		2층	8		232,697	581,920	58,190	58,190	58,190	58,190	58,190	58,190	58,190	174,590
		기준층	122		244,567	593,790	59,370	59,370	59,370	59,370	59,370	59,370	59,370	178,200
	156.148	1층	4	427,675	284,595	712,270	71,220	71,220	71,220	71,220	71,220	71,220	71,220	213,730
		2층	4		299,435	727,110	72,710	72,710	72,710	72,710	72,710	72,710	72,710	218,140
		기준층	70		314,265	741,940	74,190	74,190	74,190	74,190	74,190	74,190	74,190	222,610
	169.980	1층	15	461,931	318,069	780,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234,000
		2층	18		334,319	796,250	79,620	79,620	79,620	79,620	79,620	79,620	79,620	238,910
		기준층	324		350,569	812,500	81,250	81,250	81,250	81,250	81,250	81,250	81,250	243,750
	186.843	1층	4	538,163	319,637	857,800	85,780	85,780	85,780	85,780	85,780	85,780	85,780	257,340
		2층	4		337,507	875,670	87,560	87,560	87,560	87,560	87,560	87,560	87,560	262,750
		기준층	68		355,377	893,540	89,350	89,350	89,350	89,350	89,350	89,350	89,350	268,090

평형환산방법	114.409	130.558	156.148	169.980	186.843
㎡x0.3025 또는 ㎡÷3.3058	(구)34평형	(구)39평형	(구)47평형	(구)51 평형	(구)56평형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천원,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비고
114.409	15,720	거실(3,857), 주방(5,898), 침실1(4,019), 침실2(291), 침실3(1,655)
130.558	14,840	거실(3,914), 주방(2,624), 침실1(2,859), 침실2(2,640), 침실3(2,270), 침실4(533)
156.148	20,970	거실(5,082), 주방(6,474), 침실1(3,348), 침실2(980), 침실3(2,904), 침실4(2,182)
169.980	21,760	거실(4,446), 주방(7,356), 침실1(4,745), 침실2(653), 침실3(3,018), 침실4(1,542)
186.843	17,050	거실(4,685), 주방(2,432), 침실1(4,280), 침실2(1,737), 침실3(1,713), 침실4(2,203)

※ 발코니 확장은 별도 신청기능하며, 발코니 미확장시에는 발코니 미관상,기능상,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계약자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항 제5호, 제6조 제항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설치 및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수립한 각 실별 평면계획에 대하여 입주자분은 아파트로 계약자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각 실별 이용에 불편이있을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시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윗층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시 본인 세대의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부분천장이 단열녀 시공으로 인한 단차가 생김

■ 확장형 옵션 금액

(단위 :㎡, 천원,VAT포함)

옵션	구분	품명	114.409	130.558	156.148	169.980	186.843
장식패키지	거실	아트월	2,400	2,600	2,800	2,900	2,900
		장식가구	-	-	-	1,000	2,900
		벽장식	-	-	2,400	2,900	2,900
	주방/식당	상판	900	1,150	1,400	1,500	1,700
		수납장	1,100	2,300	1,900	2,700	3,300
		주방벽 천연석	900	900	1,100	1,200	1,100
		벽장식	400	600	-	600	1,800
	계		5,700	7,550	9,600	12,800	16,600
가구패키지	침실1(안방)	드레스장	2,000	1,500	1,500	1,900	2,400
	침실2	드레스장	-	-	-	-	2,300
	침실3	드레스장	-	1,170	1,200	2,200	-
	침실4	드레스장	-	-	-	-	2,200
	계		2,000	2,670	2,700	4,100	6,900
전체패키지	부부욕실	천연석 세면대(하부장+칠식가물)	500	-	1,400	1,500	1,900
		월풀욕조(천연석 포함)	1,400	1,500	1,700	1,700	1,900
	공통사항	장식천정(16층 이상)	900	1,000	1,900	2,100	2,800
		미확장발코니샤시	1,100	1,200	1,200	1,300	1,300
	계(15층 이하)		10,700	12,920	16,600	21,400	28,600
	계(16층 이상)		11,600	13,920	18,500	23,500	31,400

※ 상기 별도 선택가능 옵션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상기 별도 선택가능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복자이 2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시 주택과 - 7017호(2008.04.2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05번지 외 87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3층, 지상17~20층 아파트 13개동 총 783세대 및 부대시설(특별공급 포함)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3자녀 특별공급 130.053㎡ - 1세대, 156.706㎡ - 6세대, 187.052㎡ - 6세대, 214.702㎡ - 10세대 : 총 23세대)

(단위 :㎡)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층수 (최고층)
				세대별 공급면적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			
				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21942-01	2008000515(01)	130.053	101.954	28.099	130.053	5.001(35.054)	170.108	57.264	36	18
	21942-02	2008000515(02)	156.706	124.858	31.848	156.706	6.124(42.929)	205.759	70.128	216	19
	21942-03	2008000515(03)	187.052	157.115	29.937	187.052	7.707(54.019)	248.778	88.246	227	20
	21942-04	2008000515(04)	214.702	179.986	34.716	214.702	8.825(61.882)	285.409	101.091	304	20

(단위 :천원,VAT포함)

구분	주택형 (㎡)	층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입주시
								08.08.11	08.11.10	09.02.10	09.05.10	09.08.10	09.02.10	
성복자이 2차	130.053	1층	2	313,806	248,884	562,690	56,260	56,260	56,260	56,260	56,260	56,260	56,260	168,870
		2층	2		260,604	574,410	57,440	57,440	57,440	57,440	57,440	57,440	57,440	172,330
		기준층	32		272,324	586,130	58,610	58,610	58,610	58,610	58,610	58,610	58,610	175,860
	156.706	1층	4	384,301	329,499	713,800	71,380	71,380	71,380	71,380	71,380	71,380	71,380	214,140
		2층	10		344,369	728,670	72,860	72,860	72,860	72,860	72,860	72,860	72,860	218,650
		기준층	202		359,239	743,540	74,350	74,350	74,350	74,350	74,350	74,350	74,350	223,090
	187.052	1층	8	483,588	374,482	858,070	85,800	85,800	85,800	85,800	85,800	85,800	85,800	257,470
		2층	11		392,362	875,950	87,590	87,590	87,590	87,590	87,590	87,590	87,590	262,820
		기준층	208		410,232	893,820	89,380	89,380	89,380	89,380	89,380	89,380	89,380	268,160
	214.702	1층	12	553,978	431,292	985,270	98,520	98,520	98,520	98,520	98,520	98,520	98,520	295,630
		2층	16		451,762	1,005,740	100,570	100,570	100,570	100,570	100,570	100,570	100,570	301,750
		기준층	276		472,232	1,026,210	102,620	102,620	102,620	102,620	102,620	102,620	102,620	307,870

평형환산방법	130.053	156.706	187.052	214.702
㎡x0.3025 또는 ㎡÷3.3058	(구)39평형	(구)47 평형	(구)56평형	(구)64평형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천원,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비고
130.053	14,840	거실(3,914), 주방(2,624), 침실1(2,859), 침실2(2,640), 침실3(2,270), 침실4(533)
156.706	20,970	거실(5,082), 주방(6,474), 침실1(3,348), 침실2(980), 침실3(2,904), 침실4(2,182)
187.052	17,050	거실(4,685), 주방(2,432), 침실1(4,280), 침실2(1,737), 침실3(1,713), 침실4(2,203)
214.702	23,020	거실(4,706),주방(3,030),침실1(3,630),침실2(2,066),침실3(1,826),침실4(2,763),가족 실(4,999)

※ 발코니 확장은 별도 신청기능하며, 발코니 미확장시에는 발코니 미관상,기능상,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계약자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항 제5호, 제6조 제항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설치 및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수립한 각 실별 평면계획에 대하여 입주자분은 아파트로 계약자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각 실별 이용에 불편이있을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시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윗층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시 본인 세대의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부분천장이 단열녀 시공으로 인한 단차가 생김

■ 확장형 옵션 금액

(단위 :㎡, 천원,VAT포함)

옵션	구분	품명	130.053	156.706	187.052	214.702
장식패키지	거실	아트월	2,600	2,800	2,900	3,200
		장식가구	-	-	2,900	1,700
		벽장식	-	2,400	2,900	3,500
	주방/식당	상판	1,150	1,400	1,700	1,900
		수납장	2,300	1,900	3,300	3,500
		주방벽 천연석	900	1,100	1,100	1,400
		벽장식	600	-	1,800	1,200
	계		7,550	9,600	16,600	16,400
가구패키지	침실1(안방)	드레스장	1,500	1,500	2,400	4,900
	침실2	드레스장	-	-	2,300	-
	침실3	드레스장	1,170	1,200	-	1,800
	침실4	드레스장	-	-	2,200	-
	계		2,670	2,700	6,900	6,700
전체패키지	부부욕실	천연석 세면대(하부장+칠식가물)	-	1,400	1,900	2,400
		월풀욕조(천연석 포함)	1,500	1,700	1,900	2,400
	공통사항	장식천정(16층 이상)	1,000	1,900	2,800	4,600
		미확장발코니샤시	1,200	1,200	1,300	1,400
	계(15층 이하)		12,920	16,600	28,600	29,300
	계(16층 이상)		13,920	18,500	31,400	33,900

※ 상기 별도 선택가능 옵션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상기 별도 선택가능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복자이 1,2차 개별 선택 품목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114.409 성복 자이1차	130.558 성복 자이1차	156.148 성복 자이1차	169.980 성복 자이1차	186.843 성복 자이1 차	130.053 성복 자이2 차	156.706 성복 자이2차	187.052 성복 자이2 차	214.702 성복 자이2 차
바닥폴 리싱타일 (거실,주방, 현관등)	1,700	2,100	2,500	2,700	2,800	2,100	2,500	2,800	4,300
공통	주방 TV(390), 부부 욕실 비데(350), 광파 오븐(750), 냉장 냉동고(890/156.148㎡,169.980㎡,186.843㎡,156.706㎡,187.052㎡,214.702㎡에 적용), 바디 마사지 샤워 기(부부 욕실)(440/169.980㎡,186.843㎡,187.052 ㎡,214.702㎡에 적용)								

※ 상기 개별선택 품목중 바닥 폴리싱타일, 광파오븐 냉장냉동고는 패키지옵션장식패키지을 선택한 세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 총범위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발코니 시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별도 계약품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임. • 층수는 건립동별,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대비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후후 변동될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정해에 대한주택도중이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지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대)를 선택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세대별 계약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은행의 익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전산검색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청약예금 통장의 사용이 불가하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조세(종합토지세)등 추후 부과되는 설계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정산할 예정임.(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기준) •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적용주택으로 공급평형별 3%를 특별공급함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포함] 및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 및 주택소유 사실 포함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되며2순위 가능), 이와 같은 요건을 위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이점 유의하기시 바람.

인터넷, ARS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인터넷,모바일 청약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 대상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서 (*) 1,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5.29)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단, 신한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KB모바일	- 국민은행 Mbank,kbank,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WIFI 폰 기종만 가능)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에 접속
		※ 단,3순위 청약 :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금융과 서비스→ 부동산 → 3순위 주택청약	
	KB모바일청약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분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06 . 02(월), 10:00 ~12:00 [견본주택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06 . 02(월) 14:00 [견본주택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대상세대 전용85㎡이하 공급규모 7세대(하의 10% 이내로 총 7세대 – 계약체결일: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내

• 특별공급 대상자의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05 . 29)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징서1통,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용)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사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해당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등 기타서류 불가]

• 특별공급신청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일반공급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2) 3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 05 . 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특별공급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단,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재당첨 금지 적용자 제외 • 입주자 신청방법 : 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신청한다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7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임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 비율로 다음과 같이 각각 공급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비율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 신청대상 : 상기 요건을 갖춘자 중 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자 – 공급대상 : (성북자이 1차) 일반공급 79세대 중 22세대 / (성북자이 2차) 일반공급 783세대 중 23세대

3) 특별공급3 자녀 기타유의사항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명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 순위 배점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해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한다.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화함(일반공급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므로 당첨시 취소됨니다(특별공급 당첨은 평생 1회에 한함)

(성복 자이 1차) (단위 : 세대수)

구 분	114.409㎡	130.558㎡	156.148㎡	169.980㎡	186.843㎡	계
경기도	1	2	2	6	1	12
서울시	1	2	1	4	1	9
인천시	0	0	0	1	0	1
계	2	4	3	11	2	22

(성복 자이 2차)

구 분	130.053㎡	156.706㎡	187.052㎡	214.702㎡	계
경기도	1	3	3	5	12
서울시	0	2	2	4	8
인천시	0	1	1	1	3
계	1	6	6	10	23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시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수 있으며,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등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5.29.)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추가제출)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 신청 위임용)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우선순위 배점표

구 분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계		100			
자녀 수 (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2세대	5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미만	10	
당해·시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미만	5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1) 공급일정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06. 02.(10:00~12:00) 당사 견본주택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06. 02.(14:00) 당사 견본주택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장소 참조)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 함.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기입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분은 무효처리함.

2) 일반공급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05.29)현재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이상인 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공급대상)[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용인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 저축을 가입한 후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변경 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 동일 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경우 용인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 용인시 1년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가능동일순위인에는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만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3)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 분	순 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공 통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의 만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용인시 / 수도권	2008. 06. 03.	• 접수장소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 – 인터넷 : 국민은행 (www.kbstar.com) –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 시간 08:30 ~ 18:00	• 발표일시 : 2008. 06. 13 .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신문게재 (서울경제신문) 당첨자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야 하며, 개별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85㎡~102㎡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80.08.29 이전 국민은행 구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05.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85㎡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면적을 늘리기 위해 예치금액을 변경할 경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세대에 속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분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한 분 – 2002.09.05 이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09.05 포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단, 1주택 소유로 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 청약불가)				
	2순위	공 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8. 06. 04.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단, 1주택 소유로 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 청약불가)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2008. 06. 05.	• 접수장소 – 신한은행 전국영업점 인터넷(www.shinhan.com) → 금융과 서비스 → 부동산 → 3순위 주택청약 • 접수시간 09:30~18:0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노약자,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시간: 09:30~16:30.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가점접수 산정기준표

가점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시)							
가점항목	가 점	가 점 구 분	점 수	해당사항	가 점 구 분	점 수	해당사항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 16년 미만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④ 감 점	•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순위 청약에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 + ② + ③)– ④] = 점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공유지분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규칙에 관한 제6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에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소형·저가주택 이라 한다)로 호 또는 1세대 만을 1호로 하여 1년 이상 계속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나 주택공시가격이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 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에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에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30세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 (순위가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 신청시 제6조 제8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공통)

– 주택의 범위(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봄) – 주택처분 기준일(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접수일 2. 건축물 대장 등본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자로부터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타른 주택건설자로으로 이주한 경우

① 시행검사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을 경우 – 20㎡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0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가점제로 입주자를 신청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을 가점점수에서 차감한다.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을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 장기간 보유 특례)

1.(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2.(현재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 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해당 소형저가주택이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경과 기간 및 요건

• 전용면적85㎡ 초과103㎡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함.

–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일기(예치금액 변경한 자는 변경일)로 부터2년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함.

• 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구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주택구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경과한자는 변경후 면적만 신청가능단, 1년미만인 자는 변경전 면적만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저축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 기간으로 한다.

•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일반공급 신청접수 방법

• 공통 : 종별,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용인시 및 수도권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접수하고, 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모집공고문 방법)(가점제주점제신청서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접수자신청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 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각 지역별,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규정 주택수의 75%를 가점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85㎡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규정 주택수의 50%를 가점자에게 우선공급하고 5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과정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주택시일무주택세대주기간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적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창구청약자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 행 비치, 제3순위자 : 신한은행 –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에 한함)또는 본인·배우자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 동일세대 구성사 주민등록등본 1통,분리세대 구성사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 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 용 면 적			신청금 납부방법
	85㎡이하	85㎡초과 135㎡이하	135㎡초과	
청약신청금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가능한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당첨자발표 익영업일(2008. 06. 16)이후 평일 09:30~16:30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청약접수한 신한은행 본·지점 • 구비서류:주택공급신청 접수증(영수증)증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주민등록증,신청시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상기 환불시 구비서류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통,단,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신한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신청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됨]

• 상기 제 증빙 서류는 3개월 이내 발생분 첨부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신청함 • 특별공급이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특별공급은 평생1회에 한함)
일반공급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되어 입주자를 재선정함(단,순위제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신순위 청약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있음동일순위 청약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초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는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수도권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종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일시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종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정당 당첨자 : 2008.06.18. ~ 2008.06.20 (3일간, 시간: 평일 10:0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결과 기간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신청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며, 서류를 제출치 못할 경우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분양하기전 용인시청과 협의후 분양토록 한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은 행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복자이 1차		성복자이 2차		
신한은행	계약금	140-007-897323	계약금	140-007-897331	지에스건설㈜, ㈜일레븐건설
	중도금	100-023-630081	중도금	100-023-630109	

■ 발코니 확장공사비,옵션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은 행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복자이 1차	성복자이 2차	
신한은행	100-023-635113	100-023-635121	지에스건설㈜, ㈜일레븐건설

• 무통장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정당당첨자 계약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신착순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함(향후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ARS, 모바일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상기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계약 위임용)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외국인등의 경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및 연대보증인

(성복자이 1차) • 입주예정일 : 2010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성복자이 2차) • 입주예정일 : 2010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계약조건등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신청순위와 다르거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신청자 중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2002년9월5일 가입자 포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1순위 당첨자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로 판명될 경우. – 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않은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 세대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먼만 계약체결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에 의거)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도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개시전 특정일자를 지정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계약자 대출안내 ※ 계약자 대출안내는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성복자이 1차) (단위 : 원/VAT별도)

구 분	회 사	감리금액	비 고
건 축	(주)제림 엔지니어링	1,396,378,658	
전 기	(주)세대 엔지니어링	100,000,000	
소방 / 통신	(주)세대 엔지니어링	110,000,000	

(성복자이 2차) (단위 : 원/VAT별도)

구 분	회 사	감리금액	비 고
건 축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1,589,357,234	
전 기	한산 엔지니어링(주)	110,000,000	
소방 / 통신	(주)럭키기술단	110,000,000	

■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성복 자이 1차)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단위: 원)	보 증 기 간
제 01222008-101-0003300호	425,929,60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포함)까지

(성복 자이 2차)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단위: 원)	보 증 기 간
제 01222008-101-0003400호	555,929,20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의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입주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전쟁,내란 및 기타 이와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 못함으로써발생한 채무 2)주채무자가 더불변제,차명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납부한 입주금 4)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 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까지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홈오토빌코니,사시,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공사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7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항제4호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입주금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인터넷 ·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분양관->시이버청약지점->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청약센터->당첨자조회
	이용기간	2008. 06. 13. ~ 2008. 06. 22.(당첨일로 10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번호	전화 1588-9999(서비스 코드:701)	전화 1369(서비스 코드:5#)
	이용기간	2008. 06. 13. ~ 2008. 06. 22.(당첨일로 10일간)	
KB모바일	이용방법	SKT : Mbank접속→KB starnet→모바일 주택청약→Pin입력→ 당첨확인 KTF, LGT : KB뱅킹 →모바일 주택청약 →Pin입력→당첨확인	-
	이용기간	2008. 06. 13. ~ 2008. 06. 22.(당첨일로 10일간)	-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기간	※ 청약 접수시 휴대전화번호를 신고한 경우 당첨발표일영업시간 이전에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 제공(단, 당첨자에 한함)	

■ 유의사항(공통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평]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신 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 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입주자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변경될 수 있음. • 현재 임대주택임대기간 완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자 제외)가 다른 분양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된 분양주택의입주시 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을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신청서의 내용변조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받게 됨.
- 계약전 시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시 속한 동, 층,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이 다를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샷시 및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자 본인의 판단하에 설치하여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시점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후 공개된 금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발코니 구조변경시 대피공간은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아님)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등이 생길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수 있음.
- 윗층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으로 인한 본인 세대의 발코니 확장시 천장부분에 단차가 생길수 있으며, 가구, 아트월등 내부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후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동가 이상의타시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단지내 마을 명칭 및 동번호는 사업승인권자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별도로 통보될 예정으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지 않는다.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관계규정건설부 주관 30415-269065(90105)에 의거 철거할수 있음. (단, 평면설계 및 마감재등은 촬영보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 진동등은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 단지주변에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학교)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내산책로은 인한 일부 사생활 침해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주택이 아님.
-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상이한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상담 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내에서 상복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로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하여 아파트 일부동은 주출입구가 1층보다 2개층~4개층 하부에서 진입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의 옥탑, 지붕, 입면장식, 파라펫등의 경미한 외장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창문 상하부에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창호의 형태, 재질, 색상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의 파이프 드레인 개수 및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에어컨 배관은 매립 배관으로 거실은 슬림형 용도로, 안방은 벽걸이형 용도로 설치 되었음. 추가 설치시 입주자 설치분이며 시공사와 무관함. • 세대내의 위생기구등은 모델하우스와 일부 위치 및 높이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 아파트 마을명은 '버들치 마을로서 용인시 문화원에 의뢰하여 지은 것임. • 당 아파트 명칭은 수지자이 3.4차 예정이며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 디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임.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적은 규모의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분에 한하여 가능함.
- 계약을 체결한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시 고지된 약관에 의거하여 위약금을 징구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을 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디로고, 점퍼킷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도배, 도장,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입주시전점검운영요령] 에 따른다 • 신청일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사시,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홍보 카달로그, 안내문 등에 표기되는 각종 시설도로망, 학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 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세대내 천정마감과 발코니 턱의 높이는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외부 발코니의 외부 난간 높이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전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동일한 청약예금 등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자는 당일까지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및 해약이 불가함.
- 경관조명 설치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지이안센터 등)은 입주민들이 지체적으로 유지 ·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지이안센터 등)은 냉방기등을 위하여 주변에 장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 조망, 소음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시행사가 분양대금의 일부를 대출기관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알선한 경우 대출기관이 제1순위 및 제2순위 근저당권 확보조건으로 대출실행이 되기에 계약자는 대출기관의 제1순위 근저당권 확보를 위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는 법무사를 통하여 이전등기 기한 내에 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위임하여야 한다.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았으며, 사업주체 부도시 대한주택보증㈜는 입주예정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기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이행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제3의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함 • 공급안지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성복,신봉지구에 계획중인 학교는 향후 학교신설 교부금 확보 시기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여부 및 시기에 따라 변경설립시기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초중등학생은 설립지연연기시 인근 기존학교에 수용되며, 동 지구의 고등학생은 불가피하게 용인시 관내 기존학교에 분산수용 됨.

※ 본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자이 1차 유의사항

- 단지내 레벨 차이로 인하여 아파트 주출입구가 1층보다 109,110,111,112동 3.5m 하부에서 진입 계획 시공됨.
- 지하주차장에서 각동 지하 엘리베이터홀까지 약 20m(107동 1,2호 세대는 약 40m)의 복도로 연결됩니다.
- 101, 104, 105동 남측 전면에 주민 운동시설로 인하여 소음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101동 4호세대 측벽에 접하여 지하주차장 RAMP가 계획 시공됨.
- 107동 2,3호세대 108동 1,2호세대 109, 110동 1호세대와 근접하여 지하주차장 RAMP가 계획 시공됨
- 112동 2호세대 하부 PIT층으로 5번 주차장 차량 통행 계획 시공됨.
-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대하여 성복변전소, 신봉배수지 및 수지하수처리장의 준공 예정일이 지연 될 경우 건축물 사용검사가 불가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 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슬라브 두께 : 사업승인 접수기준(2004.01.)에 의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435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슬라브 두께 : 180㎜)

■ 성복자이 2차 유의사항

- 지하주차장에서 각동 지하 엘리베이터홀까지 약 20m(203,213동 1,2호 세대는 약 25m)의 복도로 연결됩니다
- 213동 : 1호 세대 2층 높이까지 산책으로 계획 시공됨. 2,3,4호 세대 2.5층 높이까지 DECK 상단과 동일한 높이로 산책이 시공됨.
  (213동 전면 및 동측면 발코니에서 10m 거리에 높이 15m 이상의 산책이 형성, 213동 전면 및 동측면 발코니에서 10m 거리에 높이 15m 이상의 산책이 형성됨)
- 212동 : 4호 세대 남측 1.3층 높이까지 RAMP 상단 산책으로 계획 시공됨 2,3,4호 세대 2.6층 높이까지 DECK 상단과 동일한 높이로 근접하여 계획 시공됨.
  (212동 전면 및 서측면 발코니에서 6m 거리에 높이 높이 6m 이상의 산책이 형성)
- 211동 : 전면 및 동측면 발코니에서 40m 거리에 높이 15m 이상의 산책 형성 전면 및 동측 발코니에서 5m에 높이 10m 이상의 인공 공사면 형성
- 208동 전면 발코니에서 13m 거리에 높이 4m의 자연식 또는 산책 형성
- 인접대지 경계선 기준 212동 5.4m, 213동 12.4m 높이까지 측벽(서측), 213동 4.4m 높이까지 측벽(동남측)과 근접하여 사업부지가 낮거 산책으로 계획 시공됨.
- 단지내 레벨 차이로 인하여 아파트 주출입구가 1층보다 205,207동 3.5m, 208동 5.2m, 209,213동 8.7m, 210,212동 11.3m 하부에서 진입계획 시공됨.
- 204, 206, 211동 남측 전면에 주민 운동시설로 인하여 소음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201동 동측 단지외 상가 시공시 단지와 연결하여 동선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201동,213동 1호세대 204,205동 2호세대, 210,212동 4호세대 209동 2,3호세대와 근접하여 지하주차장 RAMP가 계획 시공됨.
- 212동 : 서측 4호 인접대지 경계선 기준 4.4m 기량 본 사업단지가 낮거 계획 시공됨
- 213동 : 서측 4호 인접대지 경계선 기준 12.4m 기량 본 사업단지가 낮거 계획 시공됨
-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대하여 성복변전소, 신봉배수지 및 수지하수처리장의 준공 예정일이 지연 될 경우 건축물 사용검사가 불가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 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213동 3호 하부 PIT층 차량 통행.
- 슬라브 두께 : 사업승인 접수기준(2004.03.)에 의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435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슬라브 두께 : 180㎜, 공급면적 214㎡ 슬라브 두께 200㎜)

■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예정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승인 이전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에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점검 대상 :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 공사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문고, 휘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공원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우편물수취함,공중 변소등주민운동시설 : 성복자이 1차 버드인테리EA/체력단련장 1EA, 성복자이 2차 버드인테리 2EA/ 체력단련장 1EA)

■ 시 행 자 : ㈜일래븐건설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충남-주택1996-001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67-5 삼성생명빌딩 10층

■ 시 공 자 : 지에스건설㈜

■ 모델하우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2

■ 분 양 문 의 : 분양사무실 031 - 711 - 9700

■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sungbokxi.co.kr를 통해서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 용인 성복자이 1차 · 2차 체크리스트

-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것으로 외부색채, 벽체마감 및 디테일은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합성 또는 제작된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양면, 지붕디자인, 재질 커뮤니티시설, 연도형상기는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투시도에서 표현된 입면은 발코니 외부새시를 설치한 모습이며, 발코니 새시설치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도형상기의 입면, 벽체마감, 외부색채, 간판위치, 조경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시설물 수공간계획 및 운동시설, 휴게소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을 포함하는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등에 따라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전시용 가구, 이동식가구, 소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건축사항 및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 층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에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 4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홍보물의 배치도에서 도로의 선형,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 어린이놀이터 기구,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등을 위하여 설계변경되어 향후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도로, 하수 가스등 시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주진중 일부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인 성복자이 1차 · 2차 주택규모 표시방법]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주택형별 면적(㎡)X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3.3058] (예) '146.15㎡주택형'의 경우 평형환산시 '146.15X0.3025이므로'44.21평형'에 준합니다.